



##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된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59039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병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정식 기수(승마선수)가 되기 위하여 2013. 4. 25. 목요일 새벽 시간에 승마 연습을 하다가 펜스에 다리가 부딪쳐 부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 같은 날 06:00경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같은 날 10:33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를 진단한 후 2013. 4. 29. 월요일로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 조치를 하였으나, 다음날인 2013. 4. 26. 13:05 긴급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니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수술 경과를 지켜보던 피고 병원 의사는 2013. 5. 9.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로도 2013. 5. 16., 5. 30., 6. 10., 8. 5. 네 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불구의 몸이 되었고 다양한 후유장애(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하지의 구획증후군, 좌측 하지 피부 궤사)를 겪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의 후유장애는 수술시기를 놓쳐버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며, 구획증후군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함에 있어서는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 하지 마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원고가 2013. 4. 25.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했을 당시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날 21:00경 구획증후군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원고가 충분한 금식상태가 아



년 점, 움직임 및 감각이 잔존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경과를 관찰했으며, 이후 같은 달 26. 오전 구획압은 변화 없으나 움직임 및 감각이 다소 감소함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준비 및 시행하는 등 원고의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다 증상 변화에 따라 지연됨 없이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3. 4. 26.자 수술 후 원고는 횡문근융해증, 상처회복지연 등으로 인해 2차 수술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경과를 살피며 같은 해 5. 30. 수술을 시행하였다.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임상증상 변화 및 경과에 따라 신속히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횡문근융해증은 외상 또는 구획증후군 자체로 인한 질병의 경과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횡문근융해증 발생에 대하여 함께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응급실 도착 당시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응급실 방문 다음날인 2013. 4. 26.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초기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상처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횡문근 융해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바 2013. 5. 30. 좌측 경골근위부 관혈적 정복술 및 이종금속판 내고정술을 수술한 것은 원고의 경과를 볼 때 당연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사고로 인한 골절,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및 근육괴사와 염증, 이에 따른 유착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병원이 비교적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지만 피할 수 없는 나쁜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증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일련의 치료과정도 모두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구획증후군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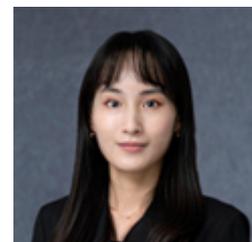
그리고 법원은 원고의 횡문근융해증은 외상 또는 구획증후군 자체로 인한 질병의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나



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횡문근융해증과 하지 마비 등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 및 그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주장을 기각했다.

위 판결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피고로서 의료소송 대응 시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 단순히 환자가 진료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인지 혹은 악결과로 인한 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후자인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적절히 주장·입증하여 해당 주장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TEL. 02 565 9801

E-mail. [jhson@lkpartner.co.kr](mailto:jhson@lkpartner.co.kr)